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
발의자 : 김예지 · 김소희 · 서천호
고동진 · 신성범 · 임종득
김상훈 · 송석준 · 백종현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,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만약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함. 나아가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데,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 할 수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, 법률안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는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그 찬성 또는 공동발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법률안 발의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해당 국회의원이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발의 또는 찬성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90조의2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0조의2(의사표시의 철회) ① 의원은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발의의원이 1명인 경우에 그 발의의원
2.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
3. 의사표시의 철회로 인하여 해당 법률안이 제79조제1항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
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에 대한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90조의2(의사표시의 철회) ①</u></p> <p><u>의원은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<u>발의의원이 1명인 경우에 그 발의의원</u></p> <p>2. <u>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</u></p> <p>3. <u>의사표시의 철회로 인하여 해당 법률안이 제79조제1항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</u></p> <p><u>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에 대한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90조 제2항을 준용한다.</u></p>